



# 주식회사 화물맨 화물정보망 회원 가입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기사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우편물 주소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차량톤수	차량종류	카고, 원, 추레라	1대 사업자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X
적재가능 파렛수	어플사용 핸드폰 기종(예 : 삼성 갤럭시 S7 / 노트5, 엘지 G5 / V10 등) :			

## 2. 서비스 이용료

가입비	30,000원	가입비는 선납이며 탈퇴할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 - 030 - 862964	(주)화물맨
정보이용료는 후불제로 매월 8일에 출금됩니다.  * 15일 이상 사용기준	화물맨 (원/추레라)	<input type="checkbox"/> 33,000원	사용자톤수 + 전국	전국	권역1~권역4 모든 권역
		<input type="checkbox"/> 44,000원	사용자 및 이하 모든톤수 + 전국		
	화물맨 (카고)	<input type="checkbox"/> 33,000원	사용자톤수+권역 1곳 선택	<input type="checkbox"/> 권역 1	서울.경기.인천.강원
		<input type="checkbox"/> 44,000원	사용자톤수+권역 2곳 선택	<input type="checkbox"/> 권역 2	충남.충북.대전
		<input type="checkbox"/> 55,000원	사용자톤수 + 전국	<input type="checkbox"/> 권역 3	전남.전북.광주
	화물맨(소형)	<input type="checkbox"/> 22,000원	1톤 ~ 5톤 + 전국	<input type="checkbox"/> 권역 4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

## 3. CMS 출금이체 신청

은행명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예금주와 관계	(인)
신청인(예금주)은 CMS 자동 출금이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 계좌에서 정보이용료가 지정된 날짜에 자동 인출되어 결제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수집,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S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li> <li>◆ 화물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한 회원등록</li> <li>◆ 원활한 정보망 및 지부 운영을 위한 업무</li> <li>◆ 회사의 부가 서비스 및 마케팅 활용</li> <li>◆ 민원처리 및 관공서 요청자료 제공</li> <li>◆ 회원간 원활한 교류를 위한 식별정보 제공</li> <li>◆ 화물정보망 사용내역 및 운송이력 등 확인</li> </ul>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법적 근거가 있는 자</li> <li>◆ 회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자</li> </ul>
수집, 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li> <l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량정보, 사업자정보, 화물등록정보 및 배차와 화물운송이력정보</li> </ul>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li> <li>◆ 서비스, 마케팅, 홍보 및 법령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li> </ul>
보유,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는 계약해지 및 탈퇴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따른 보유, 이용기간을 따르고, CMS관련 정보는 CMS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보유, 이용함</li> </ul>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최소한의 정보와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화물운송 이력정보</li> </ul>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화물정보망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li> </ul>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는 계약해지 및 탈퇴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따른 보유, 이용기간을 따르고,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li> </ul>
신청인은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또는 출금이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li> </u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예금주 (인)      신청인 (인)

## 5. 위치정보 활용 및 회원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회사가 관제프로그램 등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 고용 기사의 차량과 핸드폰에 대한 위치정보와 공차관련 정보, 운행정보 등을 찾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li> </ul>	20    년    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주)화물맨의 화물정보망 서비스 회원이용약관 내용을 (주)화물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li> </u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 6. 제출서류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사 화물운송자격증, 예금주 신분증 (고유식별정보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로만 활용)

## 7.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회원 가입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에 하자,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거부되거나, 정보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은 제출한 회원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만 합니다.</li> <li>◆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화물정보만 제공하므로, 일체의 화물운송 계약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li> </u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차주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운송기사일 경우 차주는 기사의 회원 가입신청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하여 운송기사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는데 동의해야 합니다.</li> </ul>	

## 8. 문의전화

배차관련 문의	1800-1234(1)	회원가입 문의	1800-1234(2)	FAX	031-798-2416 / 3250
주식회사 화물맨 대표이사 임영묵	경기도 광주시 장지1길 90, 2층		사업자번호	126-86-64275	



# 선 · 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 동의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화물맨(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화물을 배차 받아 운송한 차주가 운송비를 선불 또는 착불(이하 "선 · 착불"이라고 합니다)로 지급 받는 것에 대하여 화물을 등록한 주선사업자(이하 "주선사"라고 합니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선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합니다)를 회사의 화물정보망시스템에 의해 자동 정산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선불 또는 착불 표시된 화물정보에 한하며,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화물차 차주 및 주선수수료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선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제3조【정산방법】** 수수료 자동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① 차주는 본인의 가상계좌에 일정액 상당의 금액을 예치금으로 입금합니다.
- ② 주선사는 선 · 착불 표시와 함께 수수료를 명시한 화물정보를 회사의 정보망에 등록시킵니다.
- ③ 차주는 수수료가 표시된 선 · 착불 건 화물의 운송을 희망할 경우 배차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예치금이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차 받을 수 없습니다.
- ④ 예치금 차감을 통해 화물을 배차 받아 운송을 완료한 차주는 7일의 기간 내에 운송비 수령 여부를 본인의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송비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차 완료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주선사에게 수수료 자동 송금됩니다.
- ⑤ 만약, 배차 완료일로부터 7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차주가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체크)해 주지 않으면, 차주의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에 팝업창으로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7일의 기간을 한번 더 부여해 줍니다.
- ⑥ 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추가 7일의 기간 내에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확인(체크)해 주지 않을 경우, 운송비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수수료가 자동 정산되어 주선사의 가상계좌로 송금됩니다.
- ⑦ 위 제6항의 경우, 이후에 차주가 운송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주선사가 차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주선사와 차주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⑧ 주선사는 본인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 실계좌로 이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화물정보 등록】**

- ① 주선사는 최대 14일 내에 운송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물을 대상으로 선불 또는 착불을 표시해 화물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② 주선사는 선 · 착불 건 화물이라 하더라도 수수료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자동 정산되지 않습니다.

**제5조【예치금】**

- ① 차주는 선 · 착불 건 화물을 배차받기 위해 회사에서 부여한 본인의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상회하는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차주 본인이 예치금 잔액과 입 · 출금 등의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차주 및 주선사는 언제든지 가상계좌의 예치금 잔액에 대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배차신청 및 예치금 차감】**

- ① 화물정보 창에 표시된 수수료보다 차주의 예치금이 적거나 예치금이 없을 경우, 차주는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차주의 배차신청이 수락되어 배차가 완료되면 동시에 차주의 가상계좌에서 예치금이 수수료 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 ③ 회사는 차주의 예치금 잔액이 부족하여 배차신청이 거절 될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를 통해 차주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 ④ 배차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차감이 된 후 당일에 한하여 배차가 취소되면 수수료는 자동으로 차주에게 반환됩니다.

**제7조【운송비 결제와 수수료 지급】**

- ① 차주는 반드시 운송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받은 경우에는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의 "운송비 받음"항목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비 못 받음"항목에 확인(체크)하여 운송비 수령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한 곳도 확인(체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자동으로 주선사에게 수수료가 입금 처리됩니다.
- ② 주선사는 미지급 운송비에 대해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 지급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된 건의 수수료는 14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차주의 가상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 ③ 만약,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지급된 운송비, 수수료 및 "운송비 받음"항목 확인(체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선사와 차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④ 회사는 화물정보망시스템을 통해 주선사가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일자 별로 주선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수수료 수령계좌 등록】**

- ① 주선사는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선 · 착불 건 주선수수료를 수령할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주선사의 수수료 수령 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면 선 · 착불 건 자동정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수수료 수령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계좌정보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예전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등 정상적인 자동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9조【이자 및 송금수수료】**

- ① 회사는 선 · 착불 건 수수료 자동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비용에 대해 차주와 주선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차주 및 주선사에 대하여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차주 및 주선사에 대하여 예치금에서 차감한 수수료가 주선사에게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가상계좌에 대한 예치금 입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250원 및 출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150원은 이체 당사자인 차주 및 주선사가 부담합니다.
- ⑤ 가상계좌의 송금수수료는 금융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와 대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⑥ 가상계좌는 타 금융기관의 협조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신한은행 계좌로 부여합니다.

**제10조【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 ① 본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을 자동정산 처리합니다.
- ② 주선사는 차주로부터 송금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③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주선사와 차주 간의 문제로서 회사는 여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④ 차주는 선 · 착불 건 화물에 대한 운송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됨으로써, 회사가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선사에 제공하여 차주와 일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주선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로 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 위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는바, 이에 동의하고,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주)화물맨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